

##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예선 활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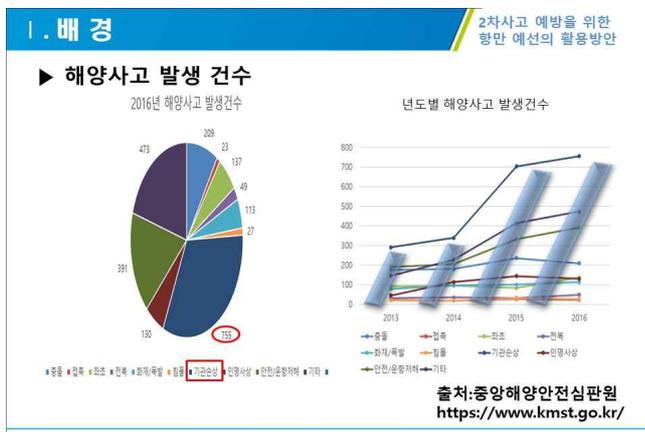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ugboat to Prevent Secondary Accidents

유용선\* · 박종익\*\* · 이동하\*\*\*

\*,\*\*\*대산항VTS센터 관계사, \*\*대산항VTS센터 센터장

**요 약** : 인명 피해를 수반한 해양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사고 예방 뿐 아니라 사고 발생시 신속한 전파를 통한 2차사고를 예방하는 관계사의 직무가 중요해졌다. 2차 사고 예방에 있어 예선의 사용이 필수적인 바 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사고 예방사례를 바탕으로 각 주체들과 타 항만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사고 발생시 예선의 효과적인 활용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핵심용어** : 2차사고 예방, 예선의 활용, 예선 운영 체계



해양경찰청

대산항VTS



해양경찰청

대산항VTS



해양경찰청

대산항VTS



해양경찰청

대산항VTS

### I. 배경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 예선의 활용방안

▶ 대인호 사례



해양경찰청 대산항VTS

### I. 배경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 예선의 활용방안

▶ 상황 분석

- ▶ 낮 시간 동안 예선의 협조 용이하나 도선 시간 이후 비협조적
- ▶ 접 이안 작업에는 협조적이나 비상상황 대응에 비협조적
- ▶ 민간 예선의 지원 뿐 아니라 공공 기관의 지원도 어려움

해양경찰청 대산항VTS

### II. 문제 분석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 예선의 활용방안

▶ 대산항 예선 운영 현황

대산항 예선 운영 현황: 11개 선사가 25척의 예선 운영 중 예선의 계약에 있어 자유계약제를 채택

- 예선 선장 임의대로 항행 곤란
- 예선의 운영이 상업적인 목적 → 비상시 협조 부족
- 항만예선의 통합적인 관리가 불가
- 비상상황 대응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운영규칙상 야간에 당직예선을 배치하게 되어 있지만 시행되고 있지 않음)

해양경찰청 대산항VTS

### II. 문제 분석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 예선의 활용방안

▶ 항만별 예선 운영 현황

구분	자유 계약제					
	군산	대산	동해	목포	여수	평택
운영협의회	○	○	X	○	○	X
협동조합	X	○	X	X	○	○

구분	공동 배선제			병행운영		공공운영
	마산	부산	울산	포항	인천	제주
운영협의회	○	○	X	○	X	X
협동조합	X	○	○	○	○	X

해양경찰청 대산항VTS

### II. 문제 분석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 예선의 활용방안

▶ 비상 대응 관련 규칙

**<대산항 예선 운영 세칙>**

**제10조(예선의 우선사용)**  
기상에 의한 표류, 해양사고 등 현재 상황으로 보아 예선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예선업자는 예선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예선의 감독)**  
② 예선업자는 매일 당직예선을 편성하여야 하며, 당직예선으로 지정된 예선은 긴급 상황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예선 정계지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 대산항VTS

### II. 문제 분석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 예선의 활용방안

▶ 운영 세칙상 비상 대응 규정



VTS등 우선 사용  
 사용자기 우선 사용  
 예선업자가 당직 예선 편성 예선업자의 협조에 사용  
 예선업자가 당직 예선 편성 비상시 긴급출동 준비태세  
 VTS등 관계자의 요청시 사용  
 예선 운영 협의회에서 당직예선 편성  
 창장의 지원명령  
 창장의 지원명령  
 예선 운영  
 ▶ 자유계약제 : 군산, 대산, 동해, 목포, 여수, 평택  
 ▶ 공동배선제 : 마산, 부산, 울산, 포항

해양경찰청 대산항VTS

## II. 문제 분석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 예선의 활용방안

### ▶ 선박의 구조적 문제



- 항만 예선이 건현이 낮은 배를 예인할 경우 자칫하면 피예인선을 손상할 위험이 있음
- 해경서는 사고 발생하여 예인작업 필요 시 민간구조선을 주로 활용



해양경찰청

대산항VTS

## II. 문제 분석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 예선의 활용방안

### ▶ 구조비 지급의 복잡성

- 구조작업에 임해도 구조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 함

<수상구조법>

제 29조(수난구조를 위한 중사명령 등)

①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조업무에 중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수난구조비용의 지급)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조에 중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임차인 또는 사용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난구조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난구조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제29조제1항의 명령에 따라 조난된 선박등과 그 여객·승무원의 수난구조에 중사한 자의 노무에 대한 보수와 그 밖의 구조비용



해양경찰청

대산항VTS

## III. 해결 방안

2차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 예선의 활용방안

### ▶ 주체별 개선방안

#### 관할 해양경찰서

- 비상상황 대응 예선 확보
- 수상구조법 교육 및 집행



#### 해양수산청

- 항만예선의 비상 대응 시스템 정착

"Collaboration"

#### VTS

- 항만 예선 비상연락망 확보 및 자원 파악
- 긴밀한 교신 유지



#### 선사

- 긴급상황 발생시 적극 협조



해양경찰청

대산항VTS